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76명(연구관 5명, 5급 37명, 6급 34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의 이상반응과 백신의 수급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국립보건연구원에 바이오빅데이터의 국가자원화와 보건의료 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출입국자, 화물 등에 대한 검역조사 및 조치 등의 검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에 mRNA 백신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조정(연구사→연구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435”를 “478”로 하고, 일반직 계 “434”를 “477”로 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6”을 “49”로 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기록연구사 “49”를 “51”로 하며,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5”를 “23”으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437”을 “4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36”을 “479”로 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6”을 “49”로 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기록연구사 “49”를 “51”로 하며,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5”를 “23”으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9”를 각각 “212”로 하고, 행정주사·서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9”를 “10”으로 하며, 보건연구관 “70”을 “72”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1”을 각각 “214”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9”를 “10”으로 하며, 보건연구관 “70”을 “7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6”을 각각 “713”으로 하고,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를 “19”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99”를 “100”으로 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00 다음에 “보건주사·보건연구사 16”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54”를 “155”로 하고,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19”를 “222”로 하며,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2”를 “69”로 하고, 보건연구관 “24”를 “29”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1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별표 5의2, 별표 6의2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의2]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보건복지부령 제00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35</u>	• <u>437</u>	+2
•	•	•	
•	•	•	
일반직 계	<u>434</u>	<u>436</u>	+2
•	•	•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 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 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기록연구사	<u>49</u>	<u>51</u>	+2
•	•	•	
•	•	•	

[별표 6의2]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보건복지부령 제00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37</u>	• <u>439</u>	+2
•	•	•	
•	•	•	
일반직 계	<u>436</u>	<u>438</u>	+2
•	•	•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 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 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기록연구사	<u>49</u>	<u>51</u>	+2
•	•	•	
•	•	•	

[별표 8의2]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보건복지부령 제00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66</u>	<u>678</u>	+12
일반직 계	<u>666</u>	<u>678</u>	+12
·	·	·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 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 ·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 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u>99</u>	<u>100</u>	+1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 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154</u>	<u>155</u>	+1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 서기·의료기술서기·간호서기 ·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219</u>	<u>222</u>	+3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 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62</u>	<u>69</u>	+7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35</u>	• <u>478</u>	+43
일반직 계	• • <u>434</u>	• • <u>477</u>	+43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 • <u>26</u>	• • <u>49</u>	+23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기록연구사	<u>49</u>	<u>51</u>	+2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u>5</u>	<u>23</u>	+18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37</u>	• <u>480</u>	+43
일반직 계	• • <u>436</u>	• • <u>479</u>	+43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 • <u>26</u>	• • <u>49</u>	+23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기록연구사	<u>49</u>	<u>51</u>	+2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u>5</u>	<u>23</u>	+18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09</u>	<u>212</u>	+3
일반직 계	<u>209</u>	<u>212</u>	+3
·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보건주사 ·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 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u>9</u>	<u>10</u>	+1
·	·	·	
·	·	·	
보건연구관	<u>70</u>	<u>72</u>	+2
·	·	·	

신·구정원대비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11</u>	<u>214</u>	+3
일반직 계	<u>211</u>	<u>214</u>	+3
·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보건주사 ·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 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u>9</u>	<u>10</u>	+1
·	·	·	
·	·	·	
보건연구관	<u>70</u>	<u>72</u>	+2
·	·	·	

신·구정원대비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66</u>	<u>713</u>	+47
일반직 계	<u>666</u>	<u>713</u>	+47
·	·	·	
·	·	·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u>5</u>	<u>19</u>	+14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 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 ·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 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u>99</u>	<u>100</u>	+1
<u>보건주사·보건연구사</u>	<u><신 설></u>	<u>16</u>	+16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 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154</u>	<u>155</u>	+1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 서기·의료기술서기·간호서기 ·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219</u>	<u>222</u>	+3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 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62</u>	<u>69</u>	+7
·	·	·	
·	·	·	
보건연구관	<u>24</u>	<u>29</u>	+5
·	·	·	
·	·	·	